

# 예산총칙

2019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86,753,598	20,602,608
일반회계	666,572,997	19,997,190
특별회계	20,180,601	605,418
기타특별회계	20,180,601	605,418
의료급여기금	996,695	29,901
주차장	18,259,250	547,778
기반시설	23,000	690
지하수관리	889,404	26,682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	12,252	368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 없음.

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4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※의존재원 표시

국비→국,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→균, 기금→기, 시비→시, 특별교부세→교,  
특별조정교부금→특